Global Legal Issue

덴마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제

I. 머리말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와 국제기준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

- 1. 법안의 배경
- 2. 법안의 목적
- 3. 법안의 적용대상
- 4. 법안의 주요내용
- 5. 법안의 효과

Ⅳ. 맺음말

김 대 홍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강사)

[특집]

2012년도 Global Legal Issue는 최근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 고 있는 '공생발전'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법제를 주제별로 다 를 계획입니다. '공생발전'은 '자본의 책임'과 '상생번영'이 중시 되는 시장경제모델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연재순서]

- · 고용관계에서의 평등확립을 위한 법제
- · 노인복지 관련법제
- ·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보장을 위한 법제
-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제
- ·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제
- 덴마크, 프랑스, 일본
-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
-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I. 머리말

덴마크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2008년 덴마크 Financial Statement Act를 개정하였다. 개정의 목적은 덴마크 Financial Statement Act의 적용을 받는 1,100여 개의 상위 대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의 해결 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사업전략을 세우 고 기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이나 환경·기후문제, 부패방지 등에 관한 내용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기업 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보고의 일환으로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입안하였다. 해당 법안에서 유일하게 요구하는 바는 일정 규 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 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의 실현 방안과 당해 회계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업평가, 향후의 전망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별도의 정책이 없는 기업의 경우 역시 이러한 측면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은 강제적인 성 격의 것이 아님이 강조된다. 기업이 위에서 언급한 인권이나 환경문제 등에 관한 대 책을 사업전략과 기업활동에 반영할지 여부와 그 방식은 전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자료의 공개에 관한 요구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 의 수립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며, 개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특정의 수행방식 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다.

덴마크는 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강조하며, 그러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지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국제적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UN Global Compact나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등을 참조하도록 하 였다. 이에 따라 덴마크의 기업과 투자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관해서 국 제기준에 근거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와 국제기준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의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기업활동을 수행할 때 인권문 제 및 사회문제, 환경·기후문제, 부패방지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을 의미한다.¹⁾ 사회문제의 경우 작업장 내의 위생 및 안전, 근로자의 만족도 및 자기 개발 등과 관련이 있으며, 장애우·노인·소수민족과 같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 하고 통합하는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해외 공급자들이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 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 환경·기후문제의 경우에는 각종 오 염과 공해를 방지하고,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며, 환경효율적인 기술을 발달 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개별 기업은 자신의 사업과 사 회 모두에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의 실현이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발 적 참여가 의미하는 바는 덴마크 기업의 경우 덴마크 법률에 따른 활동이나 외국 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현지 법률에 따른 활동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덴마크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는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때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충실하고 신뢰가능한 자료가 공개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2)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위한 자료공개에 있어서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원칙과 같은 국제기준을 따를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 다. 덴마크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공개에 있어 UN Global Compact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UN Global Compact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간 자발적 네트워크이다.

¹⁾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 section 99a (1) 참조.

[&]quot;Reporting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an introduction for supervisory and executive boards", published by the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2009 참조.

UN Global Compact의 핵심은 다음의 10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3)

인권 관련

- a)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원하고 존중해야 한다.
- b) 기업은 인권의 착취와 악용에 연루됨이 없어야 한다.

노동권 관련

- c) 기업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승인을 인정해야 한다.
- d)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되고 강요된 노동의 폐지를 지원해야 한다.
- e) 기업은 어린이 노동의 실효적인 철폐를 지원해야 한다.
- f) 기업은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환경 관련

- g)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원해야 한다.
- h) 환경과 관련한 보다 책임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 i)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한다.

부패방지 관련

i) 기업은 직무상의 부당한 이득이나 뇌물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패를 방지하 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에게 위와 같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UN의 제원칙을 모두 준수할 것이 요구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은 자신의 기업활동의 핵심적 분야와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요구되며, 이는 기업이 주도하는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의 실현을 지원하는 것이다. 인권이나 근로자의 권리, 부패방지 등과 관계 되는 원칙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근거하는 국제협약의 가입으로 덴마크 법률 에 의한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 기구선언, 리우지구환경선언, UN부패방지협약 등이 포함된다.

덴마크 기업은 덴마크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UN Global Compact에 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예방적 접

³⁾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index.html 참조.

근방식은 덴마크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덴마크 환경보 호법 시행의 경우에도 환경보호를 위한 최선의 가능한 기술과 환경오염 방지에 우 선적 중점이 놓여진다. 그러나 덴마크 기업이 해외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할 경우 현 지의 사회적·환경적 조건이 덴마크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UN에서는 이 외에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6가지 원 칙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체적 투자활동에 있어서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ESG)와 관계되는 내용을 고려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 a) ESG 문제를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 포함시킬 것
- b) 적극적으로 ESG 문제를 소유정책과 실무에 포함시킬 것
- c) 투자기업과 관련한 ESG 문제의 적절한 공개방법을 강구할 것
- d) 투자산업의 범위 내에서 제원칙을 수용하고 실행할 것
- e) 제원칙의 효과적 실행을 제고하기 위해 협력할 것
- f) 제원칙과 관련한 활동과 경과를 보고할 것

UN Global Compact 및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외에도 개 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지침과 원칙이 제시되 고 있다. OECD 경우의 예를 들면 UN Global Compact와 같이 국제협약에 기반한 다국적 기업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5 이 지침서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에도 유용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과 원칙들은 개별 기업 이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 한 기초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의 경우는 다중 투자자를 위한 네트워크로 지속가능성의 보고를 위한 국제적 지침서를 발행하고 있 다. 이러한 지침서는 개별 기업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⁴⁾ http://www.unpri.org/principles/ 참조.

⁵⁾ http://www.oecd.org/daf/internationalinvestment/guidelinesformultinationalenterprises/ 참조.

⁶⁾ https://www.globalreporting.org/ 참조.

Ⅲ.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

1. 법안의 배경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하여 국가간에 재정적 · 문화적 · 정치적 관련성이 증대함을 의미한다. 또한 상품의 생산 등에 있어서 단순한 국제무역의 증가뿐만 아니라, 생 산과정 역시 다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조건, 환경·기후문제 등과 같이 국가간·기업간의 협력이 요구되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 과 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간 · 기업간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관심이 요구 되는 사회적 과제와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 더욱 확대된 정보의 흐름 등은 기업과 투자자로 하여금 새로운 과제와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 고 있다. 따라서 세계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기업은 환경규제에 대한 준수나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있어서 보다 공개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7

2. 법안의 목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을 입법하는 목적은 기업과 투자자가 보다 적극 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실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의 핵심적인 활동과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하다. 기업은 기업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통해서 여러 사회문제의 해결에 공 헌할 수 있고, 이는 동시에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된다. 보 다 많은 덴마크의 기업과 투자자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러한 내 용이 세계적으로 인지된다면 덴마크 기업은 책임있는 성장으로 국제사회의 보다 많 은 신임을 얻을 것이다. 덴마크의 상품과 서비스가 보다 신뢰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산되고 제공된다는 인식의 확산이 곧 세계시장에서 덴마크 기업의 경 쟁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공개는 기업의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와 근로자, 언론 등이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

⁷⁾ https://www.globalreporting.org/ 참조.

적 책임의 실현에 호응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것이다. 그러나 법 안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공개는 개별 기업과 투자자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 선택과 방법에 어떠한 강제적인 변화도 야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더 나아가 개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관한 자신의 기업활동을 설명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자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기후·환 경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8)

3. 법안의 적용대상

덴마크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시행 계획에 따라 1,100여 개의 상위 대기업이 덴마크 Financial Statement Act에 규정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 료제공의 적용을 받게 된다. 덴마크 Financial Statement Act는 2001년부터 "Building Block Model"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에 의할 경우 매년 기업이 재무보고서 와 같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규정이 다르게 된다. 이 모델의 원칙은 소기업에게는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반면 대기업에 게는 보다 상세하고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소기업의 재무보고서의 경우 거의 이용이 없는 반면 대기업이나 EU/EEA 국가의 규제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허가된 기업의 재무보고서의 경우 다양한 목적하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 고 그에 대한 공공의 관심도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공개도 "Building Block Model"에 기반하고 있 다. 그에 의하면 기업은 A, B, C, D의 네 가지 보고집단으로 구성된다. 보고집단 A 의 경우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개인소유의 영업회사가 그에 속한 다. 보고집단 B의 경우 소규모 유한회사 및 소규모 비공개 유한회사가 그에 속한다. 보고집단 C의 경우 중간규모의 기업과 대규모 유한회사, 대규모 비공개 유한회사 가 그에 속하며 재무보고서의 작성에 보다 상세한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끝으로 보 고집단 D의 경우 EU/EEA 국가의 규제시장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허가된 대기업 과 국영 주식회사가 그에 속한다. 이러한 성격의 기업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보고집 단 D를 대상으로 한 보다 강화된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quot;Proposal for an Act amending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Report on social responsibility for large businesses)", introduced on 8 October 2008 by the Danish Minister for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2008: 2.2. Purpose of the Proposal 참조.

덴마크 Ministry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의 2005년 성장보고서에 의할 경우 보고집단 C에 속하는 대기업과 보고집단 D에 속하는 기업은 덴마크 전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공개의 적용을받은 대상을 보고집단 C에 속하는 대기업과 보고집단 D에 속하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집단 B에 속하는 소규모 기업과 보고집단 C에 속하는 중간규모 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이나 실무에 대한 설명의무를 갖지 않게 된다. 물론 덴마크 전체 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자발적인 자료제공을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된다.

보고집단 C에 속하는 대기업은 Financial Statements Act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세 가지 규모 제한 중 두 가지를 초과하는 기업을 가리킨다(대차대조표 총액 143백만 DKK, 순수입액 286백만 DKK, 평균 정규근로자의 총수 250명). 그러나 그룹 차원에서 자료를 이미 공개한 경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공개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덴마크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의 분석에 의하면 1,100억 개의 기업이 자료공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에 기관투자자, 투자협회, 금융기관 등이 집행명령의 개정을 통해서 자료공개의 의무를 갖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모회사일 경우 결합 재무보고서에서 그룹 전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자체 재무보고서에서는 자료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모회사가 결합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룹 전체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공개 요건을 충족한 경우자회사는 자체 경영보고서에서 동일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¹⁰⁾

또한 UN Global Compact나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를 따르면서 그러한 맥락에서 개선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공개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러한 기업은 경영보고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의 자료공개의 의무가 면제되는 내용과 자체 개

^{9) &}quot;Proposal for an Act amending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Report on social responsibility for large businesses)", introduced on 8 October 2008 by the Danish Minister for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2008: 3.1. Businesses that will be covered by the Proposal 참조; "Reporting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an introduction for supervisory and executive boards", published by the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2009: Part1. Meeting the statutory requirement 참조.

¹⁰⁾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 section 99a (5), (6) 참조.

선보고서가 발행되는 사항을 함께 명시할 수 있다.11)

4. 법안의 주요내용

1) 자료공개의 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에 따라 기업에게 공개가 요구되고 있는 관련 자 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12)

- a)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관해서 채택하고 있는 기준·지침·원칙과 같은 기 업의 정책 내용
- b)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조직이나 절차에 관 한 내용
- c)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관한 기업의 당해 회계연도의 평가 및 향후 전망

위의 세 가지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되어 야 할 UN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관한 원칙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UN Global Compact나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를 준수하면서 자체 개선보고서를 발행하는 기업 의 경우에는 자료공개의 의무가 면제된다.13)

개별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에 관한 구체적 분야와 실현방법에 대해 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 고서 역시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또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 현하는 데 수반될 재정적 결과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기업 의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자체 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내부 지침이나 구체적 목 표, 전략 등을 세우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관점에 따라 관련 자료 를 공개해야 한다.14)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은 여러 가지 도전적인

¹¹⁾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 section 99a (7) 참조.

¹²⁾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 section 99a (2) 참조.

¹³⁾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 section 99a (7) 참조.

¹⁴⁾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 section 99a (1) 참조.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관한 국내외의 모범적인 기 업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여러 해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을 수립 하고 실행하면서 그에 따른 난관과 반발을 해결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UN도 인식하고 있는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 실현에 있어 고려되 고 있는 내용이다.

2) 자료공개의 방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공개의 구체적 방식은 보고서의 발간과 그와 관 련한 감사의무로 요약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에서는 해당 기업 의 경영보고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경영보고서의 참고자료나 부록의 형태 로 포함시킬 수도 있으며, 웹사이트에 공개할 수도 있다. 해당 기업은 이와 같이 다 양하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 내용을 보고할 수 있지만, 경영보고서 이 외의 곳에 공개할 경우에는 주주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보고가 수록된 방 법과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고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서 경영보고서와 같은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15)

기업의 경영보고서는 감사에 의한 일관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감사가 경영보고서에 수록된 자료가 재정보고서에 제시된 자료나 통합 재정보고서 가 있을 경우 그에 제시된 자료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하다.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표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 주요 대상이 된 경영보고서상의 자료와 경영현황과의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감사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계되는 자료는 재무보고서의 감사 이전에 감사에게 제공된 자료로 만 구성된다.

경영보고서 이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였을 경우 경영보고 서에 수록되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감사에 의한 일관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공개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된다. 따라 서 경영보고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정확성과 일치성에 관한 일관된 검사가 가능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영보고서가 아닌 웹사이트나 추가적 보

¹⁵⁾ Danish Financial Statement Act, section 99a (3)1)·2), (4), section 149a 참조.

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영보고서상의 자료에 관 한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10

5. 법안의 효과

덴마크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의 공개에 있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료 공개의 방법을 개별 기업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 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덴마크 Center of Quality in Business Regulation(CKR)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의 실행이 갖는 효과를 분 석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에 따라 1,100여 개의 덴마크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포함되기 때 문에 양적 접근방식에 의해서는 법안의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에 따라 CKR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예상되는 최대한도로 수행하고 있는 대 기업을 대상으로 질적 접근방식에 의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CKR에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특별한 활동이 없던 기업이 새롭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 정책을 준비하는 데는 2,000 에서 6,00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 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여기에는 대략 두 배의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KR에 의하면 대략 180개 정도의 덴마크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을 포 함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은 관련 이행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 업이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구체적 정책을 채택하고 실제 실행하는 데는 정책의 내용 에 따라 다양한 이행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과 관 련하여 기업에게 실제 소요되는 시간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K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안의 적용을 받는 1,100개의 기업 중 1,030 개 정도의 기업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활동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영보고서나 참고자료의 형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CKR은 340개 정도의 기업이 경영보고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1~7.5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690개의 기업은 보다 간소한 참고자료의 형태로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4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는 매년 최대 3,00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실행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데 이와 같은 행정적 시간이 소요되지만, CK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자료의 공개가 전체적으로는 기업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에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은 해당 기업이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기업이 건실한 재정구조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나 환경과 관련한 사업과 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환경오염이 예방되고, 에너지 소비의 감소와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도 개선이 있을 것이다.¹⁷⁾

Ⅳ. 맺음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Financial Statements Act의 개정을 통해서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덴마크 이외에도 프랑스에서는 2001년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입법을 통해 열기된 기업들에 대해서 연차보고서의 일환으로 사회적·환경적 조건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이 기업전략의 기초로 자신의 사업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결정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프랑스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주주와의 소통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입법을 통해서 열기된 기업들에 대해서 사회적·환경

^{17) &}quot;Proposal for an Act amending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Report on social responsibility for large businesses)", introduced on 8 October 2008 by the Danish Minister for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2008: 5.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implications for the business sector 참조.

적 조건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에 관한 정책들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며, 연차보고서 등에 이러한 내용에 관한 항목이 없을 경우 별도의 항목을 통해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문헌

문헌

- "Proposal for an Act amending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Report on social responsibility for large businesses)", introduced on 8 October 2008 by the Danish Minister for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2008.
- "Reporting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an introduction for supervisory and executive boards", published by the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2009.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porting in Denmark-Impact of the legal requirement for reporting on CSR in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 Published by the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2010.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Reporting in Denmark-Impact of the second year subject to the legal requirements for reporting on CSR in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 Published by the Danish Commerce and Companies Agency, 2011.
- "Communic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A quantitative study of companies' compliance with Section 99a of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 and their general reporting practice for the 2010 financial year", Prepared by Center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penhagen Business School, 2011.
- "Communic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A qualitative study of companies' experience with Section 99a of the Danish Financial Statements Act for the 2010 financial year", Prepared by Center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penhagen Business School, 2011.

인터넷

www.CSRgov.dk www.samfundsansvar.dk www.unglobalcompact.org www.unpri.org www.oecd.org www.globalreporting.org